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대표발의: 서종수 의원)

의안 번호	22-32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2. 2. .

발 의 자 : 서종수, 강명숙, 김성희  
김영미, 김진천, 신종갑  
장덕준, 최은하

## 1. 개정이유

「국민건강증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, 상위법에 맞게 금주구역을 지정하고,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안 제2조제2호, 제4조제1항~제3항)

- “음주청정지역” → “금주구역”

나. 금주구역의 추가 신설(안 제4조제1항제2호)

- “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”

다.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항 신설

(안 제10조)

3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의4, 제34조제3항

4. 예산조치:

5. 기타

가. 입법예고:

나. 개정조례안: 붙임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8조”를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3조 및 제8조의4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“음주청정지역”이란”을 ““금주구역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”을 “(금주구역의 지정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”을 “「국민건강증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국민의 건강증진”으로, “음주청정지역”을 “금주구역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2. 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
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“음주청정지역”을 각각 “금주구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시행규칙)”을 “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(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

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  
규제법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조(과태  
료 부과·징수 등)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8조에 따라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·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피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<u>음주청정지역</u>”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음주청정지역의 지정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</u>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제3조 및 제8조의4-----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<u>금주구역</u>”이란 -----</p> <p>제4조(금주구역의 지정) ① ----- 「<u>국민건강증진법</u>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구민의 건강증진-----</p>

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~ 4. (생략)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<신설>

-- 금주구역-----  
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「주택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

3. ~ 5. (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)

② ----- 금주구역-----  
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 금주구역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이의제기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  
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  
조(과태료 부과·징수 등)는 공  
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 
시행한다.

# 【관 계 법 령】

## □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### 제8조4(금주구역의 지정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 제34조3(과태료)

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